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901호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 취소된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10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은 평 구 청 장

1. 지급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 :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지급신청인 :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최규일

다. 신청금액 : 금86,320,520원

라. 신 청 일 : 2017. 7. 13.

2. 지급계획

가. 지급금액 : 금86,320,520원

나. 지급대상 :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최규일 및 이해관계자

다. 지급방법 : 신청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 통장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라. 공고기간 : 2017. 7. 20. ~ 8. 11.

마. 지급일자 :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주거재생과(☎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91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본 조례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였음.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의 정의와 관련 ‘65세 이상 노인’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하여 중첩되는 단어를 피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 나.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순으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노인의 보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